

#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영양과 수분공급의 중단과 생명권<sup>1)</sup>

## 1. 사건개요<sup>2)</sup>

뱅상 랑베르(Vincent Lambert)는 2008년 9월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었으며 만성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장으로 이어지는 튜브를 통해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을 투여 받고 있다.

2012년, 뱅상 랑베르의 간병인들은 그가 표시하는 신호들<sup>3)</sup>을 보고 이것이 일상적인 도움을 거부하는 표시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신호는 늘어갔다. 이에 의료팀은 환자의 권리와 생의 마지막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이하 ‘Léonetti 법률’)<sup>4)</sup>에 규정된 공동적 절차(collective procedure)<sup>5)</sup>를 시작하였고 뱅상 랑베르의 아내인 Rachel Lambert가 이 절차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 끝에 뱅상 랑베르의 담당의사인 Kariger 박사는 환자에 대한 영양공급을 중단하고 수분공급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실행되었다.

이에 반대하던 뱅상 랑베르의 부모 등은 2013년 5월 9일 Châlons-en-Champagne 행정법원에 기본권 보장형 긴급심리(référé liberté)를 청구하였다. 행정법원은 부모 등 다른 가족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결함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병원으로 하여금 다시 뱅상 랑베르에게 음식과 수분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간호할 것을 명하였다.

2013년 9월, 새로운 공동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Kariger 박사는 6명의 의사들과 상담하였는데 그 중 세 명은 병원 외부에서 초빙되었고, 각각 뱅상

1) Lambert and Others v. France, no. 46043/14, ECHR (2015. 6. 5. 결정).

2)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9호, 국외통신원소식 “살 권리? 죽을 권리? -프랑스의 안락사 허용 문제-” 참조.

3) 눈을 깜박이는 등의 방법을 통한 신호.

4) Jean Léonetti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만들어진 ‘2005년 4월 22일 법률’은 ‘Léonetti 법률’이라고도 불리며, 환자의 권리와 생의 마지막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법률은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Code)’의 많은 조항을 수정하였다.

5) 의료진과 가족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절차.

랑베르의 부모, 아내, 의료팀에 의해 선택되었다. 2013년 9월 27일과 11월 16일에 두 번의 가족회의가 소집되었고 여기에는 뱅상 랑베르의 아내와 부모, 그리고 8명의 형제자매가 참석하였다. 뱅상 랑베르의 아내와 6명의 형제자매는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공급의 중단에 찬성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지속하는데 찬성하였다. 2013년 12월 9일, Kariger 박사는 의료팀 회의를 열었고 6명 중 5명의 의사가 치료의 중단에 찬성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월 11일 Kariger 박사는 이를 후인 1월 13일에 영양과 수분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뱅상 랑베르의 부모 등은 2014년 1월 13일 Châlons-en-Champagne 행정법원에 다시 기본권 보장형 긴급심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Kariger 박사의 결정이 뱅상 랑베르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하고 위법한 위반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뱅상 랑베르의 아내 Rachel Lambert, 조카 François Lambert와 Reims 대학병원은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에 상고하였다. 2014년 6월 국사원은 뱅상 랑베르에 대한 연명치료가 '비이성적인 고집(unreasonable obstinacy)'에 해당하며 영양과 수분공급의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곧바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되었다.

## 2. 판결요지

### 법정의견

청구인들은 Pierre Lambert와 그의 아내 Viviane Lambert, 그리고 David Philippon과 Anne Tuarze로 각각 뱅상 랑베르의 부모, 동복형, 여동생이다. 청구인들은 뱅상 랑베르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제2조6)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3조7)의 고문에 이를 정도의 학대이며, 뱅상 랑베르의 신체  
체의 완전성을 침해하여 제8조8)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1) 협약 제2조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뱅상 랑베르에게 영양과 수분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협약 제2  
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2005년  
Léonetti 법률은 명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4년 1  
월 11일 의사가 영양과 수분공급 중단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항의하였  
다. 정부는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뱅상 랑베르는 비록 살아있지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죽음에 이르게 됨이 명백하므로 비록 협약 위반이 잠  
재적이고 미래의 일이어도 청구인들이 뱅상 랑베르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제  
2조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는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 1) 적용되는 규칙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의 하나로 평가되는 협약 제2조 제1문(“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은 국가로 하여금 고의적인 생명의 박탈을  
금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소극적 의무), 그 관할권 내 사람들의 생명을 보  
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도 명하고 있다(적극적 의무).<sup>9)</sup>

우선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소극적 의무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청구인들은 비이성적인 고집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영양과 수분의 공급

---

6) 유럽인권협약 제2조 - 생명권

①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어떤 사람도 고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7) 유럽인권협약 제3조 - 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8) 유럽인권협약 제8조 - 사생활과 가정생활 존중의 권리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과 가정생활, 주거와 서신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법에 따라, 국가안보, 공공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지를 위하여, 또는 무질서와 범죄의 예방, 또는 건  
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를 행사  
함에 있어 공권력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9) L.C.B. v. the United Kingdom, 9 June 1998, § 3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중단이 합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안락사·조력자살과 비이성적인 (불합리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고의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부는 의학적 결정의 목표는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거부하였던 치료, 또는 - 환자가 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 비이성적인 고집이 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05년 Léonetti 법률은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법률은 의사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고집이 되는 경우에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의사는 고의적으로 생명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입법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이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소극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며,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견지에서만 검토하도록 하겠다.

## 2)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① 일반적 고려사항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쟁점에 대해 판결한 적은 없었지만, 관련된 이슈들은 다룬 적이 있었다. 그러나 Koch 사건의 협약 제8조의 절차적인 위반을 제외하고는, 협약 위반으로 결정된 사건은 없었다.

협약 제2조는 국가로 하여금 그 관할권 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보건의 영역에서 이러한 적극적 의무는 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안락사가 아니라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할 것이다.

재판소는 협약 제2조를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맥락에서, 특히 삶의 시작과 마지막에 관하여, 복잡한 과학적·법적·윤리적 쟁점이 제기되면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대다수가 인위적인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비록 치료의 중단을 통제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환자의 바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합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삶의 마지막과 관련된 이 영역에서, 인위적인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와 그러한 중단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국가는 판단의 재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단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재판소는 국가가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② 이 사건에의 적용

청구인들은 2005년 Léonetti 법률이 명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4년 1월 11일 의사가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들 관점에서 이러한 결함들은 국가권력이 협약 제2조에 따른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 a. 입법체제

청구인들은 법률이 비이성적인 고집과 중단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충분히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Léonetti 법률에 의해 개정된 프랑스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Code)에 의해 수립된 입법체제를 유념하고 있다. 또한 해석은 내재적으로 사법부의 업무임을 강조하였다. 2005년 Léonetti 법률이 시행된지 9년이 흐르는 동안 프랑스 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 법률조항의 해석을 청구받은 적이 없었다. 이 사건에서는 프랑스 국사원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치료(treatment)'와 '비이성적인 고집(unreasonable obstinacy)'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제를 맡았다.

국사원은 2014년 2월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해당규정은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가지며 생의 말기에 있는 환자이든 아니든 보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이 법문과 입법과정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사원은 입법부가 의도한 치료의 개념에는 환자의 생체기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의 공급은 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유럽평의회의 '생의 말기 상황에서의 의료적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침(Guida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medical treatment in end-of-life situations)'에 따르면 치료는 병의 원인에 대한 행위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이 아닌 증상에만 관련이 있거나 기능장애에 대하여 대응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이 지침은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공급에 대해 나라마다 접근법이 다르다고 적고 있다.

프랑스 공중보건법전 제L.1110조 제5항<sup>10)</sup>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거나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경우에는 비이성적 고집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청구인들은 이 기준이 부정확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Jean Léonetti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의 지위에서, 이 법문이 원래 예상했던 법문보다 엄격한 것이며 제한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첫째, 환자가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뇌손상을 입었고, 둘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자각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 순전히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인위적 연명을 가리

---

10) 프랑스 공중보건법전 제L.1110조 제5항

의료행위가 비이성적인 고집에 의해 지속되는 것을 금한다. 만약, 의료행위가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거나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는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공중보건법전 제L.1110조 제10항에 명시되어 있는 치료의무를 면제받으며 환자의 존엄성과 그의 삶의 질을 보전한다(...).

킨다고 말하였다. 2014년 6월 24일 국사원의 결정에서도 비이성적 고집에 대한 기준을 평가할 때 의사가 고려할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이 요소에는 의료적 요소(충분히 긴 시간을 커버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환자의 현재 상태와 변화, 고통의 정도, 임상 예후와 관련되어야 함)와 비의료적 요소(의사가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 - 어떻게 표현되었든지 간에 - 환자의 바람, 환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점 등)가 있다.

또한 국사원은 두 가지 중요한 보호장치를 수립하였다. 첫째, 되돌릴 수 없는 의식불명상태에 있거나, 되돌릴 수 없이 자율성을 상실하여 영양과 수분의 공급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비이성적 고집에 근거하여 의료행위의 지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둘째, 환자의 바람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생명의 유지를 거절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2005년 법률은 국사원이 해석하였듯이 충분히 명확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환자의 생명보호를 보장하는 규제력 있는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b. 의사결정과정 (The decision-making process)

청구인들은 의사결정과정이 진정으로 공동적이어야 했으며, 적어도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조정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협약 제2조나 판례법 모두 그 해석상 합의를 보장하는 절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프랑스 법률에 따른 절차가 ‘공동적(collective)’이라고 표현되고, 의료진과 수탁자, 가족 등과의 몇 번의 협의단계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환자의 담당의사이다. Jean Léonetti는 법정조언자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법률은 치료중단결정의 전적인 책임을 의사에게 주고 있으며,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죄책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결정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에서 공동적 절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지속되었고 이행의 모든 단계마다 법에 규정된 요건을 초과하여 만족하였다. 사실상 의료팀 전원 회의를 소집하였고, 뱅상 랑베르의 아내, 부모, 8명의 형제자매가 참여한 두 차례의 가족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후, 6명의 의사 중 5명과 뱅상 랑베르의 아내와 6명의 형제자매들이 치료의 중단을 찬성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국사원은 의사가 가족협의 요건을 준수하였으며, 가족구성원 간의 전원일치 의견이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법은 가족협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에 그 조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누구의 관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재판소는 누가 치료중단의 최종결정을 할 것인가와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방식 등 의사결정과정의 구성은 국가의 판단의 재량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다. 비록 청구인들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차는 협약 제2조에서 도출된 요건을 충족하였다.

### c. 사법적 구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가능했던 사법적 구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청구인들은 행정법원에 기본권 보장형 긴급심리를 신청하였다. 행정법원의 긴급심리의 경우 그 긴급함으로 인해 보통 판사가 단독으로 판결하고, 명백성 심사에 기반하여 잠정조치를 명한다. 그러나 국사원은 이 사건에서 긴급심리 판사의 역할은 의사의 결정 이행을 중단시키는 권한뿐만 아니라 그 합법성을 전체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수반하며 명백성 심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사원은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서 판사는 적용 입법조항이 유럽인권협약과 불일치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사원은 가처분 절차로서는 매우 드물게 이 사건을 17인의 전체 재판관 회의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리포트 또한 충분히 준비되었다. 국사원은 협약 제2, 6, 7, 8조와

공중보건법의 관련 조항들의 합치여부를 검토하였다.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뱅상 랑베르는 만성적인 식물인간 상태이며 회복불가능하며 의학적 예후가 나쁜 경우임이 분명하였다.

국사원은 또한 뱅상 랑베르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고자 하였다. 뱅상 랑베르와 그의 아내인 Rachel Lambert는 간호사였으며 자주 그들의 직업적 경험을 논의하였고 고도로 의존적인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표현하여 왔다. 뱅상 랑베르의 형제 중 한 명에 의해 확인된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Rachel Lambert에 의해 해당 날짜와 함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뱅상 랑베르의 다른 형제자매들은 위의 언급이 뱅상 랑베르의 성격, 경험, 관점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들도 그가 반대의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재판소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주된 당사자는 환자 자신이며 그의 동의는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이는 환자가 자신의 바람을 표현할 수 없을 때조차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유럽평의회는 '생의 말기 상황에서의 의료적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침'의 권고에 따르면 환자는 이전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구두로 털어놓은 표현된 바람에 의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여해야 한다. 재판소는 비교법적 자료를 통하여, 사전지시나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이 없는 경우에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환자의 추정적 바람을 알아내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Pretty v. the United Kingdom* (no. 2346/02, § 65, ECHR 2002-III) 사건에서 개인에게 연명치료에의 동의를 거절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제출된 증언이 치료의 중단 또는 지속에 관한 뱅상 랑베르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기에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할 권리가 프랑스 국사원에게 있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 d. 정리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매우 복잡한 의료적, 법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재판소는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이 국내법과 협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법에 따라 환자의 바람을 규명하는 주된 주체는 국내 당국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한다. 재판소의 역할은 국가가 협약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입법체제와 의사 결정과정이 제2조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적 구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구체적인 전문적 의료 보고서와 의료 및 윤리 기구의 일반적인 의견 모두의 측면에서 모든 관점이 표현되고 모든 측면이 신중하게 고려되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국내당국이 협약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준수 하였다고 판결한다.

#### e. 결론

2014년 6월 24일 국사원의 판결을 이행하더라도 협약 제2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다.

### (2) 협약 제8조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그들이 가정생활의 존중에 대한 협약 제8조의 위반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 주장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청구인들에 의해 제기된 주장에 흡수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주장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 (3) 협약 제6조 위반 여부<sup>11)</sup>

---

11) 청구인들은 국내절차에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국사원은 공중보건법 규정에 따른 의사의 역할이 협약 제6조 및 7조에서 도출된 공정성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청구인들은 더 나아가 2014년 1월 11일 결정을 내린 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의사는 이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국사원에 의해 요청된 전문적 의료 보고서도 그 의사와 충분히 대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협약 제6조 제1항을 원용하였는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결정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설사 제6조 제1항이 2014년 1월 11일 의사가 내린 결정의 과정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주장이 명백하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재판소는 12대 5로, 국사원의 2014년 6월 24일 판결을 이행하는 경우에 협약 제2조의 위반이 되지 않음을 판결한다.

#### **부분적 반대의견(5인 의견)<sup>12)</sup>**

##### **(1) 다수의견에 대한 유감**

우리는 다수의견과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수의견은 미묘한 법적 구분과 자세한 논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현재 상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심각한 불구자에게서 두 가지 생명유지 필수품인 음식과 물을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수의견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가 지금까지

---

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면서는 협약 제2, 3, 8조를 원용하였지만 재판소는 제6조도 더불어 검토하고 있다.

12) 재판관 Hajiyev, Šikuta, Tsotsoria, De Gaetano, Gričco의 의견.

약자들에게 제공해온 보호의 정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2) 뱅상 랑베르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의 부재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만일 이 사건이 뱅상 랑베르가 그의 신체적 불구와 고통 때문에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표현하였거나 물과 음식을 명백하게 거절하였다면, 우리는 수분과 음식 공급을 중단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협약상의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데, 제2조의 생명권과 제8조의 개인의 자율권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의 존중'이 우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뱅상 랑베르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다.

## (3) 뱅상 랑베르의 상태와 음식 및 수분 공급의 의미

뱅상 랑베르는 최소한의 의식만 있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지만 뇌사상태는 아니다.<sup>13)</sup> 실제로 그는 기계 없이 스스로 숨 쉬고 음식을 소화한다. 하지만 삼키거나 고체음식을 식도 아래로 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고통 받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 고통은 그가 계속 침대나 휠체어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과 구별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바에 따르면, 의식이 거의 없는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뱅상 랑베르는 침대를 나와 옷을 갖춰 입고 휠체어를 타고 가족과 함께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다. 2012년 9월에도 Kariger 박사는 뱅상 랑베르의 부모들이 휴일동안 그를 남프랑스에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첫 번째 음식 중단 결정이 있기 6개월 전으로 그의 상태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장관영양법(enteral feeding)은 최소한의

---

13)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대뇌에 손상을 입어 인지능력은 없지만, 뇌간(뇌줄기)이 손상되지 않아서 눈을 뜨거나 잠을 자거나 위장 및 심장운동, 호흡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반면에 뇌사 상태의 경우 뇌간을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이 손상되어 자발적인 호흡이나 심장박동, 무의식적 반사 반응이 불가능하고 기계 없이는 장기가 살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훈련으로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계속 투여될 수 있다고 한다. 뱅상 랑베르의 상황에서 장관영양 및 수분공급법은 전적으로 온당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왜 당국이 뱅상 랑베르를 특화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막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뱅상 랑베르는 살아있다. 그는 음식을 먹여줘야 하는데 음식과 물은 두 가지 기본적인 생명유지 필수품으로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가 허용한 것은 '플러그를 뽑는 것'이라기 보다는 (랑베르는 생명유지장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음식과 수분의 공급을 중단하여 사실상 그를 굶겨 죽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전적인 고려인가? 이것은 이 사건에서 제기된 적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상당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인가? 그러나 그러한 효과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더 이상 쓸모없거나 사회에 중요하지 않아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만 갖고 있기 때문인가?

#### **(4) '사전지시'가 없는 경우 뱅상 랑베르의 추정적 바람의 판단**

이미 지적하였듯이 뱅상 랑베르가 현재 그의 상황에서 음식과 수분공급의 지속여부에 관하여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말이 없다. 비록 그가 사고 전에 직업 간호사였지만, 그는 공중보건법 여러 조항상의 어떠한 '사전지시'를 진술하거나 '수탁자'를 지명한 적이 없다. 수년 전 건강했을 때 평소의 대화에서 말하였거나 말하지 않았던 것을 사후에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그 제도를 중대한 남용의 위협에 노출시키게 된다. 설사 뱅상 랑베르가 매우 의존적인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관점을 표현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말은 음식과 물을 박탈당하고자 하는 갈망에 대한 충분한 정도의 확신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청구인들은 만일 뱅상 랑베르가 진정으로 죽기를 원했고 심리적으로 포기하였다면 처음 영양공급이 중단된 2013년 4월 10일부터 행정법원이 영양공급의 재개를 명한 2013년 5월 11일까지 총 31일 동안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삶을 포기한 그와 같은 상황의 환자는 열흘 이내에 죽지만 뱅상 랑베르는 하루에 고작 500ml의 물만으로 음식공급 없이 31일이나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뱅상 랑베르의 추정적 바람과 의도에 대한 강조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프랑스 법에 따르면 의식불명인 환자가 사전지시를 해놓은 적이 없는 경우, 그의 바람과 가족들의 의견은 단지 담당의사의 분석을 보완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바람은 결코 최종 결과에 결정적이지 않다. 공동 절차도 기본적으로는 형식상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 **(5) 생의 말기에 있지 않은 뱅상 랑베르**

뱅상 랑베르는 결코 '생의 말기'에 있지 않다. 그러나 영양과 수분의 공급이 중단되면 안타깝게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뱅상 랑베르보다 더한 역경에 있는 사람조차 - 동시에 다른 병이 발병된 것이 아니라면 - 긴박한 말기의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영양공급은 삶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생명 유지의 통상적인 방법이며 원칙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

#### **(6) 이익형량에 있어 생명의 가치의 무게**

영양과 수분의 공급에 관한 문제는 종종 '인위적'이라는 용어로 수식되는데 이 사건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혼돈을 일으킨다. 모든 형태의 음식 먹이기는 - 그것이 아기의 입에 젓병을 물리는 것이든 식당에서 음식을 입에 넣기 위해 식기류를 이용하는 것이든 - 어느 정도는 인위적이다.

그러나 뱅상 랑베르의 상황에 있는 환자의 경우 제기되는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수분과 영양의 공급이 과도한 아픔이나 고통이나 지나친 자원의 소모 없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생명을 보전할 적극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부담이 이익을 초과한다면 국가의 의무는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한다. 국가의 판단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이 폭넓다 하더라도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하는 협약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판단의 재량과 프랑스 당국의 이익형량 방법을 평가함에 있어, 재판소는 생명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었어야 했다. 이 사건은 태아에 관한 사건처럼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가와 같은 생명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건이 아니다. 뱅상이 살아있다는 것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 우리 생각으로는 뱅상 랑베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며, 따라서 제2조가 뒷받침하는 원칙에 따라 물과 음식의 투여를 포함한 통상적이고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7) 이 사건 법률의 명확성의 결여 및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우리는 이 사건 법률에 대하여, 무엇이 통상적인(ordinary) 치료이고 무엇이 특별한(extraordinary) 치료인지, 무엇이 비이성적인 고집인지, 무엇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지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주로 국내법원임이 사실이다. 프랑스 국사원은 그 판결에서 국내법이 협약 제2조와 제8조에 합치되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 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와, 식물인간상태에 있고 심각하게 마비되어 그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내재된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안락사 사건에 해당

우리는 개념상 안락사와 조력자살이 치료의 포기과 구분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안락사가 아니라고 언급한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안락사에 관한 사건이다. 피청구인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법이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 (9) 사망에 대한 고의

국사원에서 공공 조사위원회는 비록 치료의 중단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와도 그 행위의 의도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뱅상 랑베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은 별개로 하고, 통상적인 간호(또는 치료)와 특별한 간호(또는 치료)의 적절한 구분이 있을 때에만 위의 진술이 옳다고 할 것이다. 사람에게 음식물을 먹이는 것은 통상의 간호행위이고 음식과 물의 공급중단은 필연적으로 사망을 수반한다.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십중팔구 죽음을 야기할 것을 아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 (10) 유럽의 양심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책을 출간하며 '유럽의 양심(The Conscience of Europe)'이라는 제목을 받아들였다. 한 기관이 양심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양심은 박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가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복잡한 의학적·법적·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덕

적 정도(recta ratio)에 기반하여 윤리적 문제가 법적 논증을 올바른 최종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양심의 정수이다. 우리는 재판소가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유럽의 양심이라는 칭호가 박탈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